

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를 위한

# 이해충돌 방지제도 안내

## 이해충돌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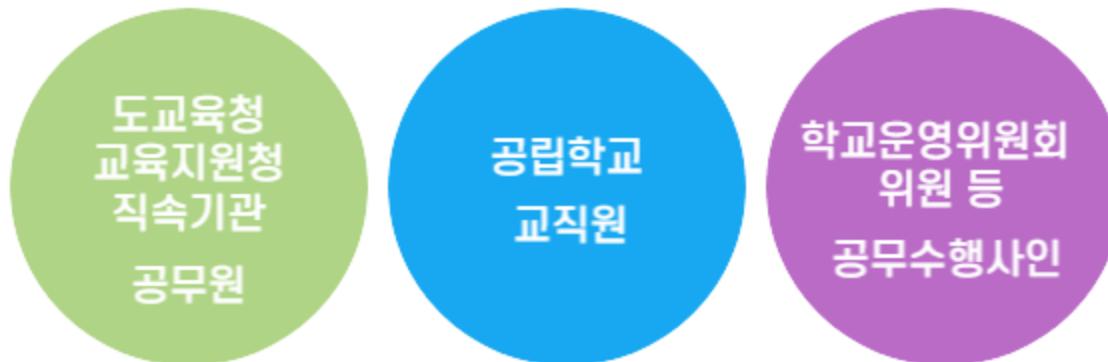
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


## 적용 대상

- 공무원, 국·공립학교 교직원, 공무수행사인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

〔  
경  
기  
적  
용  
교  
대  
부  
상  
〕



## 직무관련자

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 
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 
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
인가, 허가, 면허, 등록, 특허, 인증 등

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 
계약을 체결하거나  
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 
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
공사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계약

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 
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 
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
단속, 조사, 감독, 부담금·과태료 부과 등

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 
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 
다른 공직자

산하기관, 피평가기관,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

## 사적이해관계자

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(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)

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·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

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·법인·단체

공직자로 채용·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·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 
고문·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·법인·단체

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, 출자지분 총수의 30%,  
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법인·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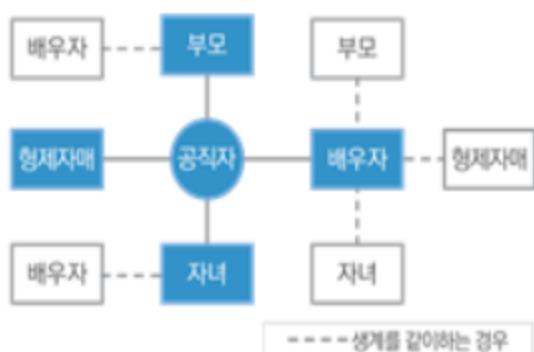
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·국장·과장으로서 직무담당  
공직자를 지휘·감독하는 상급자

공직자를 지휘·감독하는 상급자

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원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

## ※ 민법(제779조) 상 가족의 범위

- ◎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
- ◎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
- ◎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
및 형제자매





직무수행시  
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 
발생한다면 신고·제출의무를  
확인하세요!!

## 〈공직자가 해야할 신고·제출의무〉

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신청

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
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
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
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### 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신청

- 신고의무자: **공직자**
- 신고의무발생: 직무관련자가 **사적관계자임**을 알게된 경우
- 신고방법: **안 날로부터 14일**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**신고·회피 신청**
- [Check] '안 날'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 공식적·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
- 조치방법: **7일 이내** ①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, ②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, ③ 직무 재배정, ④ 전보 조치
- [Check] 공직자를 대체하는 것이 어렵거나,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 가능(확인·점검 필요)
- 위반시제재: **직무중지(취소)+징계+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+부당이득의환수**

### 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
- 신고의무자: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
- [Check] 경기도교육청은 시행령 제6조, 제7조의 **부동산 취급·개발업무 없음**
- 신고의무발생: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 내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 보유·매수하는 경우
- 신고방법: (보유) **안 날로부터 14일** 이내 (매수) 등기완료일로부터 **14일 이내**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
- 위반시제재: **직무중지(취소)+징계+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+부당이득의환수**

### 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
- 신고의무자: 공직자 윤리법 상 재산공개 대상자
- [Check] **경기도교육감만 해당**
- 신고의무발생: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있는 경우
- 신고방법: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**내역제출**
- 위반시제재: **직무 중지(취소) + 징계 +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### 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

- 신고의무자: **공직자**
- 신고의무발생: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,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(**금전거래, 부동산거래, 각종 계약**)하는 행위를 알게된 경우
- [Check] '가족의 범위'는 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으로 **형제자매는 제외(사적이해관계자 범위와 다름)**
- 신고방법: 거래한다는 것(**사전**), 거래했다는 것(**사후**)을 **안 날로부터 14일 이내**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**신고**
- [Check] '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,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' **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**
- 조치방법: **7일 이내** ①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, ②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, ③ 직무 재배정, ④ 전보 조치
- 위반시제재: **직무 중지(취소) + 징계 +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### 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- 신고의무자: **공직자**
- 신고의무발생: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(최근 2년 이내)인 직무관련자와 **골프, 여행, 사행성오락**을 하는 경우
- [Check] '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범위'는 퇴직자와의 **모든 사적 접촉이 아니라** 퇴직자가 **직무관련자일 경우**로서 **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을 한 경우로 한정**
- 신고방법: **사적 접촉 전**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**신고**  
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)
- 조치방법: **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** ①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②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③ 직무 재배정 ④ 전보 등 **조치 가능**
- 위반시제재: **직무 중지(취소) + 징계 +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

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 
공직자는 해당행위를  
하지 않습니다.

## 〈공직자가 하지 말아야할 제한 금지 행위〉

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

가족 채용 제한

수의계약 체결 제한

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

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


###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

- 제 한 대 상 자: [공직자](#)
- 제 한 행 위: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, 조언·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
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
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·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
④ 외국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
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

- [Check]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다른 법령·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가능  
②④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 가능  
예)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
- 위반 시 제재: [시정·직무 중지\(취소\) + 징계 +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](#)

### 가족 채용 제한

- 제 한 대 상: [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](#)
- 제 한 행 위: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① 고위 공직자(교육감) 가족  
② 채용업무담당 공직자 가족  
③ 감독기관 또는 ④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가족  
채용 금지

- [Check] ② 채용업무담당 공직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 결재선 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포함
- [Check] 업무담당 공직자는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확인서 징구(공개채용 등 경쟁절차에 의한 채용 시는 제외)
- 위반 시 제재: [시정·직무 중지\(취소\) + 징계 +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](#)

### 수의계약 체결 제한

- 제 한 대 상: [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](#)
- 제 한 행 위: 아래의 자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 
① 고위 공직자(교육감)  
② 계약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
③ 감독기관 또는 ④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
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
⑥ 지방자치단체등을 감사·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
⑦ ①~⑥의 가족 ⑧ ①~⑥이 대표자인 법인·단체  
⑨ ①~⑥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

[Check]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포함

[Check] 업무담당 공직자는 수의계약 체결 대상자로부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확인서 징구

※ 확인서 징구 생략이 가능한 경우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3조의 견적서 제출 생략 시
- 나라장터 온라인종합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 시
- 반복되는 계약 체결 시(최초 또는 담당자·업체 대표자 변경 시에는 재징구)

- 위반 시 제재: [시정·직무 중지\(취소\) + 징계 +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](#)

###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

- 금 지 대 상 자: [공직자](#)
- 금 지 행 위: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건물·토지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

- [Check] '사적인 용도의 사용·수익'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 등을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

- 위반 시 제재: [시정직무중지\(취소\)+징계+2천만원이하의과태료+부당이득의환수](#)

## 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
- 금지 대상자: 공직자(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), 제3자
- 금지 행위: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사적 이용 금지

[Check] '미공개정보'란 재물·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것

- 위반 시 제재

공직자	본인·제3자의 <b>재산상</b> 이익	징계 + 7년 이하 징역(7천만원 이하 벌금) + 몰수·추징
제3자	본인·제3자의 <b>사적</b> 이익	징계 + 3년 이하 징역(3천만원 이하 벌금) + 몰수·추징
제3자	부정한 방법으로 취득·이용한 재산상 이익	5년 이하 징역(5천만원 이하 벌금) + 몰수·추징

## ■ 의무행위 및 법 위반 신고

